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19127 |
| 의 뢰 인 | 백혜련의원 |
| 회 답 일 | 2026.7.16. |
| 추계번호 | 26D2752 |

#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## 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7년 총 101억 3,500만원(연평균 50억 6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| | 2026 | 2027 | 합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안 제3조(특별검사의 임명),<br>안 제6조(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),<br>안 제7조(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),<br>안 제9조(수사기간 등),<br>안 제10조(재판기간 등),<br>안 제13조(보수 등) | 인건비 | 1,715 | 2,296 | 4,011 | 2,006 |
| | 운영비 | 2,438 | 1,532 | 3,970 | 1,985 |
| | 시설비 | 490 | - | 490 | 245 |
| | 사무실 임차료 | 825 | 838 | 1,664 | 832 |
| | 합계 | 5,468 | 4,666 | 10,135 | 5,068 |

주 1.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 8월로,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각각 최장기간(140일, 12개월)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고,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,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2.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 Ⅱ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3조제4항(특별검사의 임명) |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| 의무규정 |
| 2 | 안 제6조제5항(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) |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, 파견검사의 수는 20명,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함 | 재량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3 | 안 제7조(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) | 특별검사는 8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, 대통령은 5일 이내에 후보자 중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함(제1항) | 의무규정 |
| | |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(제3항) | 재량규정 |
| | |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 공소 유지를 위한 경우 특별검사보·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함(제6항) | 의무규정 |
| 4 | 안 제9조(수사기간 등) |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(제1항) | 재량규정 |
| | |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(제2항) | 의무규정 |
| | |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,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(제3항) | 재량규정 |
| | |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(제4항) | 재량규정 |
| 5 | 안 제10조제1항(재판기간 등) |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제1심의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, 제2심 및 제3심의 경우에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| 6 | 안 제13조(보수 등) |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,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,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고,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| 의무규정 |

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3조제4항(특별검사의 임명) | O | - |
| 2 | 안 제6조제5항(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) | O | - |
| 3 | 안 제7조(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) | O | - |
| 4 | 안 제9조(수사기간 등) | O | - |
| 5 | 안 제10조제1항(재판기간 등) | O | - |
| 6 | 안 제13조(보수 등) | O | -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특별검사,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(이하 "특별검사등"이라 함) 임명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, 운영비, 시설비 및 사무실 임차료로 구분하고, 수사기간과 기소 후 공소유지기간 간 인력규모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사기간과 공소유지기간을 구분하여 추계

❑ 특별검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「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김건희 특검법」이라 함)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(이하 "김건희 특검"이라 함)의 직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참고

○ 특별검사등의 처우 및 활동기간 등을 「김건희 특검법」(개정 기준)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

[표 2] 제정안과 「김건희 특검법」 비교

| 구 분 | 제정안 | 「김건희 특검법」 |
|---|---|---|
| 특별검사등의 대우 및 보수 수준 | 특별검사: 고등검사장 수준<br>특별검사보: 검사장 수준<br>특별수사관: 3급~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수준 | 좌동 |
|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인원 | 특별검사보: 4명<br>특별수사관: 최대 40명 | 특별검사보: 6명<br>특별수사관: 최대 80명 |
|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수 | 파견검사: 최대 20명<br>파견공무원: 최대 40명 | 파견검사: 최대 70명<br>파견공무원: 최대 140명 |
| 수사기간 | 140일 이내(준비기간 포함) | 200일 이내(준비기간 포함) |
| 공소유지기간 | 12개월 이내 | 좌동 |

❑ 수사기간에 특별검사보는 4명, 특별수사관은 3급 수사관 40명이 임명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공소유지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직급 구성은 「김건희 특검법」에 따른 특별검사 사례를 참고

○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특별수사관을 정원의 일부만 임명하고, 기타직을 수사 인력 보조 등을 위하여 추가 채용하여 운용[1]하고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임명될 특별수사관의 직급과 기타직 수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, 수사기간에 기타직 없이 모두 특별수사관(3급)을 정원에 따른 최대인원(40명)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

○ 특별검사, 특별검사보, 특별수사관은 전원 신규임용되는 것으로 가정

○ 공소유지기간의 인력 규모는 김건희 특검의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를 참고하여, 수사 인력의 2분의 1 수준(특별검사 1명, 특별검사보 4명, 특별수사관 18명)으로 유지한다고 가정

❑ 파견인원은 최대인원인 60명으로 가정

○ 제정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는 20명 이내, 공무원은 40명 이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수사기간에 최대인원인 검사 20명, 공무원 40명을 파견한다고 가정. 다만, 공소유지기간 파견인력은 21명으로 가정

○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[2]

1) 「김건희 특검법」의 경우 특별수사관 정원은 최대 80명이나, 실제 수사기간에 임명한 특별수사관은 최대 46명이고, 기타직은 최대 23명을 채용하였음(자료: 법무부)

2) 파견인원의 인건비는 「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

❑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경비 등에 대한 단가는 김건희 특검의 집행 내역[3]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[4] 및 소비자물가상승률[5]을 각각 반영하여 산정

○ 특별검사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

○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은 200일(2025.6.12.~ 2025.12.28.)이고, 운영비와 시설비 모두 이 기간에 지출된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하되, 공소유지기간 중의 운영비는 수사기간 운영비의 60% 수준으로 가정

○ 시설비 단가는 수사기간과 공소유지기간 동일하다고 보고, 모두 2026년에 발생한다고 가정

– 수사기간 종료 후 인원 축소 등의 사유로 업무공간을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소유지기간의 시설비 소요를 추계

❑ 수사기간은 140일, 공소유지기간은 12개월로 가정

○ 현 시점에서 실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은 각각 최장 기간(140일, 12개월)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---

3) 김건희 특검 관련 경비 집행 내역: 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| | 수사기간(준비기간 포함 200일)<br>(2025.6.12.~ 2025.12.28.) | 공소유지기간<br>(2025.12.29. ~ ) |
|---|---|---|
| 직무활동 운영비[1] | 5,891 | –[3] |
| 시설비[2] | 595 | –[3] |

1) 운영비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경비를 합산하여 산출
2) 시설비는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, 네트워크 공사, CCTV 설치공사 등
3) 김건희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기간으로 운영비·시설비 총 소요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, 공소유지기간의 운영비 단가는 수사기간 운영비 단가의 60%, 시설비 단가는 수사기간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

주: 수사기간 활동인원은 평균 185명(특별검사 1명, 특별검사보 5명, 특별수사관 39명, 기타직 21명, 파견인력 119명)이었음

자료: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4)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(2026.3.30. 경제전망 기준)

| 구분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| 3.5% | 3.0% | 3.0% | 3.0% | 3.0%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5) 소비자물가상승률(2026.3.30. 경제전망 기준)

| 구분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 | 2.3% | 2.0% | 2.0% | 2.0% | 2.0%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제정안 부칙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으로 함

○ 제정안에 따라 2026년 8월부터 수사준비를 시작하여 2026년 12월까지 총 140일간 수사를 마무리하고, 2026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년은 공소유지기간으로 가정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 가. 인건비

❑ 수사기간(140일) 및 공소유지기간(12개월)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는 3대 특검(내란특검, 김건희특검, 순직해병특검)의 기준 보수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3] 3대 특검 직급별 기준 보수액(2025년 기준)

| 직급 | 월 평균 보수(원) |
|---|---|
| 특별검사 | 12,122,000 |
| 특별검사보 | 10,925,000 |
| 특별수사관(3급) | 7,126,000 |

주: 월 평균 보수액은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기관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임
자료: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○ 2025년 기준 보수액에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적용하여, 수사기간(140일) 및 공소유지기간(12개월)에 해당하는 인건비 소요액을 다음의 표와 같이 추계

[표 4] 수사기간에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 추정: 2026년

| 구분 | 2026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1인당 월 보수액 (A, 백만원) | 인원 (B, 명) | 기간 (C, 개월) | 재정소요 (D=A×B×C, 백만원) |
| 특별검사 | 12.5 | 1 | 4.7 | 59 |
| 특별검사보 | 11.3 | 4 | 4.7 | 213 |
| 특별수사관(3급) | 7.4 | 40 | 4.7 | 1,387 |
| 합계 | - | 45 | - | 1,658 |

주: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[표 5] 공소유지기간에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 추정: 2026~2027년

| 구분 | 2026 | | | | 2027 | | | | 재정소요 합계 (D+H, 백만원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1인당 월 보수액 (A, 백만원) | 인원 (B, 명) | 기간 (C, 개월) | 재정소요 (D=A×B×C, 백만원) | 1인당 월 보수액 (E, 백만원) | 인원 (F, 명) | 기간 (G, 개월) | 재정소요 (H=E×F×G, 백만원) | |
| 특별검사 | 12.5 | 1 | 0.3 | 4 | 12.9 | 1 | 11.7 | 151 | 155 |
| 특별검사보 | 11.3 | 4 | 0.3 | 14 | 11.6 | 4 | 11.7 | 545 | 559 |
| 특별수사관(3급) | 7.4 | 18 | 0.3 | 40 | 7.6 | 18 | 11.7 | 1,600 | 1,640 |
| 합계 | - | 23 | - | 57 | - | 23 | - | 2,296 | 2.353 |

주: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❑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는 총 40억 1,100만원으로 추계

[표 6] 제정안에 따른 인건비 추정: 2026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| 2026 | | 2027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| 수사기간 | 공소유지기간 | 공소유지기간 | |
| 인건비 | 1,658 | 57 | 2,296 | 4,011 |

주: 위 인건비는 특별검사, 특별검사보, 특별수사관 전원을 신규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액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나. 운영비

❑ 특별검사의 운영비는 수사기간의 경우 김건희 특검의 운영비 단가를 적용하고, 공소유지기간의 경우 수사기간 운영비 단가의 60%를 적용하여 추계

❑ 수사기간 운영비는 총 23억 9,900만원으로 추계

○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(6.7개월) 직무활동 운영비 1인당 단가(4.8백만원)[6]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[7]를 적용

❑ 공소유지기간 운영비는 총 15억 7,000만원으로 추계

○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운영비 1인당 단가의 60%를 적용한 단가(2025년

6) 수사기간의 직무활동 운영비(58억 9,100만원)를 개월 수(6.7개월)와 활동인원(평균 185명)으로 나누어 산출. 해당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
7) 총 105명(특별검사 1명, 특별검사보 4명, 특별수사관 40명, 파견인력 60명)

2.9백만원)에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[8]를 적용

❑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총 39억 7,000만원으로 추계

[표 7] 제정안에 따른 운영비 추정: 2026~2027년

| 구분 | | 2026 | | | | 2027 | | | | 재정소요 합계 (D+H, 백만원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1인당 재정소요 (A, 백만원) | 인원 (B, 명) | 기간 (C, 개월) | 재정소요 (D=A×B×C, 백만원) | 1인당 재정소요 (E, 백만원) | 인원 (F, 명) | 기간 (G, 개월) | 재정소요 (H=E×F×G, 백만원) | |
| 운영비 | 수사기간 | 4.9 | 105 | 4.7 | 2,399 | - | - | - | - | 2,399 |
| | 공소유지기간 | 2.9 | 44 | 0.3 | 39 | 3.0 | 44 | 11.7 | 1,532 | 1,570 |
| 합계 | | - | - | - | 2,438 | - | - | - | 1,532 | 3,970 |

주: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## 다. 시설비

❑ 시설비는 김건희 특검의 시설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

○ 시설비는 수사기간과 공소유지기간 모두 2026년에 발생한다고 가정

❑ 수사기간 시설비는 총 3억 4,600만원으로 추계

○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1인당 단가(3.2백만원)[9]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를 적용

❑ 공소유지기간 시설비는 총 1억 4,500만원으로 추계

○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단가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를 적용

❑ 시설비 총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4억 9,000만원으로 추계

8) 총 44명(특별검사 1명, 특별검사보 4명, 특별수사관 18명, 파견인력 21명)
9) 수사기간의 시설비(5억 9,528만원)를 활동인원(평균 185명)으로 나누어 산출, 해당 금액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함

[표 8] 제정안에 따른 시설비 추정: 2026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| 구분 | | 2026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1인당 재정소요 (A, 백만원) | 인원 (B, 명) | 재정소요 (C=A×B, 백만원) |
| 시설비 | 수사기간 | 3.3 | 105 | 346 |
| | 공소유지기간 | 3.3 | 44 | 145 |
| 합계 | | - | - | 490 |

주: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## 라. 사무실 임차료

❑ 사무실 임차료는 수사기간의 경우 김건희 특검의 1인당 면적에 활동인원 수와 서울 도심지역 임대료 단가(2025년 3분기 월 31,000원/㎡)[10]를 각각 반영하여 추계. 관리비는 임대료의 50%(2025년 3분기 월 15,500원/㎡)로 가정함

❑ 수사기간 사무실 임차료(관리비 포함)는 총 8억 400만원으로 추계

○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1인당 면적(35㎡)[11]에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(105명)를 적용하여 사무실 임차면적(3,678㎡)을 산출한 후, 임대료 단가와 관리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산출

❑ 공소유지기간 사무실 임차료(관리비 포함)는 총 8억 6,000만원으로 추계

○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1인당 면적(35㎡)에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(44명)를 적용하여 사무실 임차면적(1,541㎡)을 산출한 후, 임대료 단가와 관리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산출

❑ 사무실 임차료 총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16억 6,400만원으로 추계

10) 한국부동산원,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(2025.10.30. 등록)
11) 수사기간의 사무실 임대면적(6,480㎡)를 활동인원(평균 185명)으로 나누어 산출함

[표 9] 제정안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(관리비 포함) 추정: 2026~2027년

| 구분 | | 2026 | | | | 2027 | | | | 재정소요 합계 (D+H, 백만원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임차면적 (A, ㎡) | 단가 (B, 천원) | 기간 (C, 개월) | 재정소요 (D=A×B×C, 백만원) | 임차면적 (E, ㎡) | 단가 (F, 천원) | 기간 (G, 개월) | 재정소요 (H=E×F×G, 백만원) | |
| 사무실 임차 | 수사기간 | 3,678 | 46.5 | 4.7 | 804 | - | - | - | - | 804 |
| | 공소유지기간 | 1,541 | 46.5 | 0.3 | 21 | 1,541 | 46.5 | 11.7 | 838 | 860 |
| 합계 | | - | - | - | 825 | - | - | - | 838 | 1,664 |

주 1. 단가는 임대료(월 31,000원)와 관리비(월 15,500원)를 합산한 것임
2.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마. 추계결과

❑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1억 3,500만원으로 추계

[표 10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| | 2026 | 2027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안 제3조(특별검사의 임명),<br>안 제6조(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),<br>안 제7조(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),<br>안 제9조(수사기간 등),<br>안 제10조(재판기간 등),<br>안 제13조(보수 등) | 인건비 | 1,715 | 2,296 | 4,011 |
| | 운영비 | 2,438 | 1,532 | 3,970 |
| | 시설비 | 490 | - | 490 |
| | 사무실 임차료 | 825 | 838 | 1,664 |
| | 합계 | 5,468 | 4,666 | 10,135 |

주 1.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 8월로,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각각 최장기간(140일, 12개월)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고,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,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2.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 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 8월로,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각각 최장기간(140일, 12개월)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고,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,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# Ⅴ. 작성자

❑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|
|---|---|---|
| 행정비용추계과 | 전상욱 | 김안나 |

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전상욱 | 02-6788-4673 | flyhigh@assembly.go.kr |